

<의안번호 제2007- 5호>

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
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4. 23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. 4. 24

2. 개정이유

- 2006. 2.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2007. 1. 1부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함에 따라,
- 수승대 관광지내 시설이용료(썰매장)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자구 수정(안 제4조)
 - 청소년, 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(대학생·방위병 삭제), 어른 삭제
- 썰매장 이용권 및 시설이용료 징수기준 중 썰매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별지 제4호 서식, 별표 2)
 - 부가가치세 포함된 요금임을 표기
- 법제처의 “법령입안 심사기준” 개정에 따른 제명 띄워쓰기와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를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함

4. 참고사항
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
- 예산조치 : 기 세입된 31,971천원에 대한 부가세 3,000천원 추경편성
- 입법예고 : 생략(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사항임)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됨에 따라 수승대 관광지내 시설이용료(썰매장)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(정의)에 있어서 청소년, 군인에 대한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존의 대학생과 방위병을 삭제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부분 수정한 사실이었으며,
 - 안 제11조(위탁징수) 제2항의 별표 2(시설이용료)의 썰매장 이용료 안내 및 썰매장 이용권에 ‘이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’고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뭉만큼 시설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혜적인 부분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
-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